회계학 1부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산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시오.

【문제 1】 물음 1), 물음 2)는 각각 독립적인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주)세무의 투자주식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5점)

1)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국세의 주식 100주(의결권의 5%)를 1주당 ₩10,000에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주)국세의 1주당 공정가치는 ₩11,000이었다.
2) 20×2년 1월 1일에 (주)세무는 (주)국세의 주식 500주(의결권의 25%)를 1주당 ₩12,000에 추가 취득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세무는 보유한 (주)국세의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이 시점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일괄하여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다. 20×2년 1월 1일 현재 (주)국세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으며,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원가와 (주)국세의 순자산 공정가치 중 (주)세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일하였다. (주)국세는 20×2년도 당기순이익으로 ₩50,000을 보고하였으며, 20×2년 말 (주)국세의 1주당 공정가치는 ₩12,300이었다.
3) (주)국세는 20×3년 2월 20일에 1주당 ₩2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하였으며, 20×3년도 당기순이익으로 ₩80,000을 보고하였다. 20×3년 말 (주)국세의 1주당 공정가치는 ₩12,500이었다.
4) 20×4년 1월 2일에 (주)세무는 보유 중인 (주)국세 주식 400주(의결권의 20%)를 1주당 ₩13,000에 처분하였으며, 더 이상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세무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국세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 (주)세무가 20×2년 1월 1일과 12월 31일에 수행할 분개를 제시하시오.

20×2년 1월 1일	(차변)	(대변)

20×2년 12월 31일	(차변)	(대변)

(2) (주)세무의 20×3년 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계산하시오.

20×3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	

(3) (주)세무가 20×4년 1월 2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계산하고, 이 때 수행할 분개를 제시하시오. (단,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액 앞에 '(-)'를 표시하며, 계산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처분손익	

(차변)	(대변)

물음 2) (주)세무의 공장건물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5점)

1)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공장건물을 ₩25,000,000에 신규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곧바로 공장건물을 제품생산에 사용하였다. (주)세무는 공장건물에 대하여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0으로 추정하고,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하기로 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20×1년 말과 20×2년 말 공장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24,750,000과 ₩26,400,000이었다. (주)세무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할 때, 총장부금액은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하고, 재평가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와 같아지도록 조정한다. 또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 (주)세무는 20×3년 들어 경기악화로 동 공장건물의 가동을 멈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세무는 20×3년 7월 1일에 동 공장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전환하고 즉시 임대를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임대목적으로 전환한 시점에서 공장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변경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0×3년 7월 1일 현재 공장건물의 공정가치는 ₩25,000,000이었다.

(1) (주)세무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재평가잉여금을 계산하시오.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	공장건물 관련 재평가잉여금
①	②

(2) (주)세무의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재평가잉여금을 계산하시오.

공장건물 감가상각누계액	공장건물 관련 재평가잉여금
①	②

(3) (주)세무의 20×3년 7월 1일 재분류 직전 공장건물 감가상각누계액과 재분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평가손익을 계산하고, 20×3년 7월 1일에 수행할 분개를 제시하시오.

재분류 직전 공장건물 감가상각누계액	재분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평가손익 (단, 손실은 금액 앞에 '(-)'를 표시하며, 계산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표시)
①	②

(차변)	(대변)

【문제 2】 물음 1), 물음 2)는 각각 독립적인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주)세무는 액면금액이 ₩1,000,000인 사채(표시이자율 연 6%, 만기일 20×2년 12월 31일, 매년 말 이자 지급)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8%이었으며, 20×0년 12월 31일 현재 동 사채의 장부금액은 ₩964,298이다. 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사채의 만기를 20×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표시이자율을 연 6%에서 연 3%로 낮추기로 채권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채무조정수수료 ₩15,000을 지급하였다. 사채 계약조건 변경일(20×1년 1월 1일) 현재 (주)세무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현행시장이자율은 연 10%이다. 현재가치 계산이 필요할 경우 다음의 현가계수를 이용하고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예: ₩555.555.. → ₩556] (14점)

기간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	
	8%	10%	8%	10%
1	0.9259	0.9091	0.9259	0.9091
2	0.8573	0.8264	1.7833	1.7355
3	0.7938	0.7513	2.5771	2.4868
4	0.7350	0.6830	3.3121	3.1699

(1) 20×1년 1월 1일 위 사채의 계약조건변경이 실질적인 변경인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술하고, 20×1년 1월 1일 (주)세무가 수행할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실질적 조건변경 여부	판단 근거
실질적 조건변경이면 ○, 그렇지 않으면 ×로 표시	

(차변)	(대변)

(2) 조건변경 후 (주)세무가 위 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해야 하는 20×1년 이자비용과 20×1년 말 현재 동 사채의 장부금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20×1년 이자비용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
①	②

(3) 만약 위의 계약조건 변경 시 만기 연장은 동일하나, 표시이자율을 연 3%가 아니라 연 5%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할 때, 해당 계약조건변경이 실질적인 변경인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술하고, 20×1년 1월 1일 (주)세무가 수행할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실질적 조건변경 여부	판단 근거
실질적 조건변경이면 ○, 그렇지 않으면 ×로 표시	

(차변)	(대변)

물음 2)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주)나라리스로부터 기초자산 A(기계)를, (주)민국리스로부터 기초자산 B(사무실)를 각각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초자산 A와 B의 리스 모두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이며 리스기간은 6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기초자산 A와 B는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며, 모든 리스는 소액기초자산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개시일 현재 기초자산 A의 내용연수는 8년(잔존가치 ₩0), 기초자산 B의 내용연수는 10년(잔존가치 ₩0)이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며, 20×1년 1월 1일 (주)세무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이다. (주)세무는 모든 사용권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사용권자산은 모두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을 이용하여 상각한다. 한편, 현재가치 계산이 필요할 경우 다음의 현가계수를 이용하고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예: ₩555.555.. → ₩556] (16점)

기간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	
	5%	10%	5%	10%
1	0.9524	0.9091	0.9524	0.9091
2	0.9070	0.8264	1.8594	1.7355
3	0.8638	0.7513	2.7232	2.4868
4	0.8227	0.6830	3.5460	3.1699
5	0.7835	0.6209	4.3295	3.7908
6	0.7462	0.5645	5.0757	4.3553

(1) (주)세무는 기초자산 A(기계)에 대한 리스료로 20×1년과 20×2년에는 연간 ₩100,000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리스료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20×3년과 20×4년의 리스료는 20×3년 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20×5년과 20×6년의 리스료는 20×5년 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리스개시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이었으나 20×3년 1월 1일에는 120으로 상승하였고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20×3년 1월 1일 (주)세무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10%이다. 기초자산 A의 리스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과 20×3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아래 항목의 금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단, 기초자산 A의 리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자본화된 금액은 없다.)

구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20×2년	①	②
20×3년	③	④

(2) 기초자산 B는 1,000m^2의 사무실 공간이며, 이에 대한 리스료로 (주)세무는 연간 ₩200,000을 지급한다. 20×3년 1월 1일에 (주)세무는 리스기간 중 남은 4년 동안 사무실의 공간을 1,000m^2에서 500m^2로 줄이기로 (주)민국리스와 합의하였으며, 남은 4년 동안 리스료로 매년 말에 ₩120,000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리스계약변경시점인 20×3년 1월 1일 (주)세무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10%이다. 기초자산 B의 리스와 관련하여 20×3년 1월 1일 (주)세무가 인식할 리스부채와 리스변경손익, 그리고 20×3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산하시오. (단, 기초자산 B의 리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자본화된 금액은 없다. 또, 리스변경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액 앞에 '(-)'를 표시하며 계산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 으로 표시하시오.)

구분	리스부채	리스변경손익
20×3년 1월 1일	①	②

구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20×3년 당기손익	③	④

【문제 3】 맞춤가구를 주문생산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주)세무는 하나의 보조부문(동력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절단부문, 조립부문)을 운영하며, 정상개별원가계산(normal job costing)을 채택하고 있다. 동력부문의 원가는 전력사용량(kWh)을 기준으로 제조부문에 배부하며 단일배부율을 사용한다. 제조부문은 부문별 단일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며 절단부문의 경우 기계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조립부문의 경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각 작업에 배부한다. (주)세무는 개별법을 이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며, 당기 회계연도는 20×2년 1월 1일부터 20×2년 12월 31일이다. (20점)

1) 동력부문의 20×2년도 연간 원가예산은 다음과 같다.

동력부문의 원가 = ₩216,000 + ₩2 × 전력사용량(kWh)

2) 제조부문의 20×2년도 연간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절단부문	조립부문
보조부문원가 배부 전 제조간접원가	₩600,000	₩311,000
직접노무시간	800시간	2,600시간
기계가동시간	5,000시간	800시간
기계가동시간당 전력사용량	2kWh	2.5kWh

3) 20×2년도 각 작업과 관련된 실제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07	#201	#202
직접재료원가	₩300,000	₩100,000	₩200,000
직접노무원가	230,000	150,000	320,000
직접노무시간			
절단부문	200시간	200시간	400시간
조립부문	900	300	1,200
기계가동시간			
절단부문	1,500시간	1,000시간	1,500시간
조립부문	400	120	200

4) 전기로부터 이월된 작업 #107은 당기에 완성되어 판매되었으며, #201과 #202는 당기에 착수하여 당기 말 현재 #201은 미완성, #202는 완성되었다. (주)세무의 기초제품재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초재공품에 대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초재공품
직접재료원가	₩160,000
직접노무원가	200,000
제조간접원가	60,000

물음 1) 절단부문과 조립부문의 부문별배부율은 각각 얼마인지 계산하고, 작업 #107, #201, #202에 배부되는 제조간접원가를 각각 계산하시오. (5점)

물음 2) 당기 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전,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및 매출원가는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3점)

물음 3)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 후, 절단부문과 조립부문의 실제제조간접원가가 각각 ₩720,000과 ₩356,400으로 집계되었을 경우, 당기 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부문별로 계산하고, 그 차이가 과소배부(부족배부) 또는 과대배부(초과배부)인지 표시하시오. (5점)

물음 4) (주)세무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에 따라 배부하는 경우, 당기 말 배부차이 조정 후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및 매출원가는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7점)

【문제 4】 무선이어폰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주)세무는 무선이어폰에 장착되는 주요 부품인 음성수신장치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주)세무는 20×1년도에 무선이어폰 생산 및 판매량을 1,000단위로 예상하고 음성수신장치 1,000단위를 자체 생산할 계획에 있으며, 1,000단위의 음성수신장치 생산과 관련된 원가를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20점)

구 분	총 원 가
직접재료원가 (₩600/단위)	₩600,000
직접노무원가 (₩900/시간)	900,000
변동제조간접원가 (₩900/직접노무시간)	90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500,000
합 계	₩2,900,000

물음 1) (주)세무는 외부공급업자로부터 무선이어폰에 장착되는 음성수신장치 1,000단위 전량을 공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세무가 이 공급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고정제조간접원가 중 ₩100,000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생산설비를 임대하여 연간 ₩200,00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주)세무가 외부공급업자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을 계산하시오. (3점)

물음 2) (주)세무는 무선이어폰에 장착되는 음성수신장치의 생산방식을 기존 생산방식에서 1묶음(batch)의 크기를 5단위로 하는 묶음생산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주)세무는 생산방식을 묶음생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생산방식에서 발생하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중 ₩100,000과 변동가공원가(variable conversion cost)의 30%를 절감할 수 있고 생산설비의 일부를 임대하여 연간 ₩150,00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작업준비와 관련하여 묶음당 ₩4,000의 변동제조간접원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세무가 생산방식을 묶음생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생산방식과 비교하여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계산하시오. (단,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액 앞에 '(+)'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4점)

물음 3) (주)세무는 무선이어폰에 장착되는 음성수신장치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외부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검토하던 중, (주)국세로부터 20×1년도에 소요될 음성수신장치 1,000단위 전량을 단위당 ₩3,50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국세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에 (주)세무는 기존 생산설비를 이용, 외부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음성수신장치를 추가적으로 가공하여 음성송신기능을 갖춘 고급사양의 음성송수신장치를 생산할 수 있으며, 무선이어폰에 해당 음성송수신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무선이어폰의 단위당 판매가격을 ₩1,500 인상할 수 있다. 고급사양의 음성송수신장치 생산을 위한 추가가공은 묶음생산방식에 의해 가공이 이루어지며, 추가가공과 관련된 원가는 묶음(batch)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가공원가(variable conversion cost)로서 묶음당 ₩10,000이 발생한다. (주)세무가 (주)국세의 제안을 수용하려면 추가가공을 위한 1묶음의 크기는 최소 몇 단위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단, 고급사양의 음성송수신장치를 장착한 무선이어폰의 생산·판매량은 1,000단위로 동일하다.) (7점)

물음 4) (주)세무는 20×1년도에 무선이어폰 1,000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음성수신장치 1,000단위를 기존 생산방식에서 250단위를 1묶음(batch)으로 하는 묶음생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세무가 음성수신장치를 묶음생산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직접노무시간은 90%의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모형을 따르며, 음성수신장치 250단위 생산과 관련된 원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총 원 가
직접재료원가 (₩600/단위)	₩150,000
직접노무원가 (₩900/시간)	225,000
변동제조간접원가 (₩900/직접노무시간)	225,000
고정제조간접원가	500,000
합 계	₩1,100,000

(주)세무는 무선이어폰에 장착되는 음성수신장치를 묶음생산방식으로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연간 생산계획을 수립하던 중, 무선이어폰에 장착이 가능한 동일한 사양의 음성수신장치를 외부공급업자로부터 단위당 ₩2,100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주)세무가 20×1년도 무선이어폰 생산에 필요한 음성수신장치 1,000단위 전량을 외부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묶음생산방식에 의해 자체 생산하는 경우에 비하여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계산하시오. (단,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액 앞에 '(+)'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6점)

회계학 2부

<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문제 1】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0년도 귀속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이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30점)

1. 갑의 금융소득 관련자료

(1) 국내의 은행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이자 ₩3,000,000이 있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원천징수되지 아니함) ₩5,000,000을 수령하였다.
(3) 비상장법인인 (주)A의 주주(지분율 40%)로서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20,000,000이다. (주)A는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자기주식(지분율 20%)에 배정될 부분은 실권처리하였다.
(4) 상장법인 (주)B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8,000,000이 있다.
(5)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액 ₩30,000,000이 있다.
(6)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60%를 채권에 투자한 상태이고 전액 과세대상임) ₩3,000,000이 있다.

2. 갑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관련자료

(1)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직근로자로서 갑이 2020년도에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3,000,000이다(월정액급여는 ₩2,050,000이며 직전연도 총급여는 ₩28,000,000이었음).
(2) 갑은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있는데 그 이익은 ₩5,000,000이다.
(3) 회사로부터 식권을 제공받은 가액 ₩1,800,000(=150,000 × 12월)이 있다(이 식권은 외부음식업자와 계약에 의해 제공되며 현금으로 환급되지 아니함).
(4) 자녀학비 보조금으로 ₩3,000,000과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업료(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었으며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임) ₩2,000,000을 수령하였다.
(5) 위 항목 이외에 급여로 받은 금액 ₩20,000,000이 있다.
(6) 갑은 2010.1.1.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약정대로 10년 동안 매년 ₩5,000,000씩 총 ₩50,000,000을 납입하였는데 이 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4,000,000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7) 갑은 위 연금저축계좌로부터 연금수령 개시가 가능한 시기인 2020.1.1.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는데, 2020년도 연금수령액은 ₩18,000,000이다(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없음).
(8) 2020.1.1. 현재 연금계좌평가액은 ₩70,000,000이며 갑은 2020년 현재 60세이다.

3. 갑의 양도소득 관련자료

(1) 갑은 2020.3.1.에 배우자 을로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고(증여당시 시가 8억원) 2020.10.5.에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30,000,000이었고 신고세액공제 ₩900,000을 제외한 ₩29,100,000을 납부하였다.

(2) 갑이 양도한 상가건물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을의 취득내역	증여내역	갑의 양도내역
일 자	2011.4.1.	2020.3.1.	2020.10.5.
실거래가액	₩600,000,000	₩800,000,000	₩900,000,000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	15,000,000	-	20,000,000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의 경우 16%이고 9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8%이다.

4. 기타 관련자료

(1)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2) 연금소득공제액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3)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물음 1)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양식에 따른 해답을 제시하시오. (9점)

구 분	해 답
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③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배당소득금액	

물음 2) 근로소득 및 연금계좌 인출과 관련하여 다음 양식에 따른 해답을 제시하시오. (12점)

구 분	해 답
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근로소득금액	
② 연금수령한도	
③ 연금계좌인출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④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연금소득금액	

물음 3)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양식에 따른 해답을 제시하시오. (9점)

구 분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양도소득금액		
② 양도소득산출세액		

③ 갑에게 적용될 양도소득 산출세액	

【문제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 (주)A는 2020.10.10.(합병등기일)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주)B를 흡수합병하였다. (주)A와 (주)B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주)B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와 시가 자료이다.

1. 합병 직전 (주)B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단위: 원)

유동자산	40,000,000	부 채	50,000,000
토 지	100,000,000	자본금	20,000,000
건 물	2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0
		이익잉여금	60,000,000
합 계	160,000,000	합 계	160,000,000

2. (주)B가 합병직전 보유한 자산의 시가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부채의 장부가액과 시가는 동일하다.

구 분	금 액
유동자산	₩40,000,000
토 지	120,000,000
건 물	40,000,000
합 계	₩200,000,000

3. (주)B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또는 △유보)는 없다고 가정한다.

4. (주)A가 납부하는 (주)B의 법인세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료 2> 다음은 (주)B의 주주관련 사항 및 합병대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1. 합병직전 (주)B의 주주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	취득가액	지분비율
(주)A	₩20,000,000	40%
(주)C	30,000,000	60%

2. (주)A는 (주)C와 특수관계가 아니며, (주)A는 (주)B의 주식을 2018.10.15.에 취득하였다.

3. (주)A는 (주)C에게 합병대가로 시가 ₩40,000,000(액면가액 ₩20,000,000)인 (주)A의 신주를 교부하고, 추가적으로 합병교부금 ₩8,000,000을 지급하였다.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주)A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과세를 이연하기 위한 조건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

물음 1) <자료 1>과 <자료 2>를 이용하여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0점)

(1) 합병시 금전교부 간주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2)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주)C의 의제배당금액을 제시하시오.

<자료 3> 다음은 합병등기일 현재 (주)A와 (주)B의 합병관련 자료이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토지의 취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2,000,000(△유보)이 있다.

2. (주)C는 유일한 (주)B의 주주이며, (주)A는 (주)B의 합병대가로 (주)C에게 시가 ₩150,000,000(액면가액 ₩80,000,000)인 (주)A의 신주를 교부하였다. 또한 (주)A는 합병교부금으로 ₩20,000,000을 (주)C에게 지급하였다. (주)C는 (주)B의 주식을 ₩40,000,000에 취득하였으며, (주)A와 (주)C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3. (주)A는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주)B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유동자산	40,000,000	(대)	부채	50,000,000
	토지	120,000,000		현금	20,000,000
	건물	40,000,000		자본금	80,000,000
	영업권	2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70,000,000

4. (주)B의 합병직전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장부가액은 ₩160,000,000이고 부채의 장부가액은 ₩50,000,000이다.

5. 위의 합병은 적격합병이 아니다.

물음 2) <자료 3>을 이용하여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함) (10점)

(1) 합병과 관련된 (주)A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주)B의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을 제시하시오.

(3) (주)C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제시하시오.

【문제 3】 다음 자료를 기초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같은 자료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단,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내국의 제20기(2020.1.1.~2020.12.31.) 토지 매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1. (주)내국은 2020.5.1.에 토지를 ₩50,000,000(장부가액은 양도가액의 60%임)에 매각하면서 아래의 표와 같이 대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0.5.1. (계약금)	2020.8.1. (1차 중도금)	2021.9.1. (2차 중도금)	2022.9.1. (잔금)
₩5,000,000	₩5,000,000	₩10,000,000	₩30,000,000

(1) 토지의 사용수익일은 2020.8.1.이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잔금 수령일이다.
(2) (주)내국은 2020.5.1.에 계약금 ₩2,000,000을 수령하고, 2020.8.1.에 ₩8,000,000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2022.9.1.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3) (주)내국은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인도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였다.
(4) (주)내국은 2021.8.1.에 폐업하였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제20기와 제21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하시오. (4점)

사업연도	조정유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제20기				
제21기				

물음 2) <자료 1>을 이용하되 (주)내국이 폐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제20기와 제21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하시오. (4점)

사업연도	조정유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제20기				
제21기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중소기업이 아님)인 (주)내국의 제20기(2020.1.1.~2020.12.31.)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8,000,000,000(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없음)이며, 이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물 매출액 ₩500,000,000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②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 ₩35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③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22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④ 반제품 매출 ₩130,000,000이 누락되어 있다.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의 금액은 ₩150,000,000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이사의 동창회비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이 ₩6,000,000 있다.
② 건당 ₩10,000 초과 적격증빙 수취분(문화접대비 ₩17,000,000 포함)은 ₩45,000,000이다.
③ 건당 ₩10,000 초과 영수증 수취분은 ₩23,000,000이다.
④ 위의 ①, ②, ③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당 ₩10,000 이하이며,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

물음 3) <자료 2>를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과 접대비손비한도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금액적용률의 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음) (3점)

구 분	해 답
접대비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	
접대비손비한도액	

물음 4) <자료 2>를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의 예시에 따라 하시오. (단, 접대비손비한도액은 물음 3)의 결과를 이용할 것) (4점)

조정유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제품	×××	유보
...	...	...	...

<자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사회적 기업은 아님)인 (주)내국의 제20기(2020.1.1.~2020.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제20기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55,000,000이다.

2. 제20기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비용 ₩36,000,000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②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서를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지출한 금액은 ₩10,0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한 금액은 ₩20,000,000, 독립기념관에 지출한 금액은 ₩20,000,000이다.

③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사업연도별 한도초과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사업연도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초과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제12기(2012.1.1.~2012.12.31.)	₩2,000,000	-	₩3,000,000
제14기(2014.1.1.~2014.12.31.)	5,000,000	-	4,000,000
제16기(2016.1.1.~2016.12.31.)	10,000,000	-	-
제18기(2018.1.1.~2018.12.31.)	12,000,000	-	1,000,000

④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80,000,000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중 ₩10,000,000은 본사건물 건설관련 특정차입금의 건설사금이자이며, 제20기 말 현재 동 건물은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⑤ 영업외수익에는 자산수증이익 ₩50,000,000(국고보조금 ₩10,000,000 포함)이 계상되어 있다.

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0,000,000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

3.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발생액	잔액
제10기(2010.1.1.~2010.12.31.)	₩100,000,000	₩90,000,000
제11기(2011.1.1.~2011.12.31.)	80,000,000	80,000,000
제12기(2012.1.1.~2012.12.31.)	70,000,000	70,000,000

4. (주)내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음 5) <자료 3>을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다음 양식의 예시에 따라 작성하시오. (4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제품	×××	유보	제품	×××	유보
…	…	…	…	…	…

물음 6) <자료 3>을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기부금관련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의 예시에 따라 하시오. (4점)

조정유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제품	×××	유보
…	…	…	…

물음 7) <자료 3>을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2점)

구 분	해 답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자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중소기업 아님)인 (주)내국의 제20기(2020.1.1.~2020.12.31.) 토지등양도소득에 관련된 자료이다.

1. (주)내국은 제20기에 토지(비사업용)를 양도하였다. 양도가액은 ₩600,000,000(실지거래가액)이며 이 자산의 매입가액은 ₩150,000,000(실지거래가액)이고 매입부대비용은 ₩20,000,000이다.

2. 위의 자료 외의 제20기 (주)내국의 소득금액은 ₩250,000,000이다.

3. (주)내국은 해당 토지를 2015.1.1.에 취득하였으며, 미등기 상태이다.

물음 8) <자료 4>를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2점)

구 분	해 답
과세표준	
산출세액	

물음 9) <자료 4>를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토지등양도소득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3점)

구 분	해 답
토지등양도소득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문제 4】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세무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1. 2020.12.1.에 제품을 할부조건으로 ₩50,000,000(회계기준에 따른 현재가치는 ₩45,000,000임)에 판매하였다. 대금은 인도일에 ₩10,000,000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4회로 분할하여 매 6개월마다 ₩10,000,000씩 수령하기로 하였다. 2020.12.1.에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약금과 할부금을 합한 ₩50,000,000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20.10.1.에 거래처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원가 ₩5,000,000(시가 ₩8,000,000)의 제품(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20.11.30.에 업무용 소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됨)를 ₩12,000,000에 6개월 할부조건으로 매각하고 인도하였다. 대금은 2020.11.30.부터 매월 말에 ₩2,000,000씩 수령하기로 하였다.

4. 제품을 2021.1.20.에 인도할 예정이나 2020.12.30.에 거래처의 요청으로 ₩17,000,000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대금청구시기 및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 등은 없다.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일	제품인도일	대금수령일	금액
제품A	2020.12.30.	2021.1.20.	2021.1.5.	₩9,000,000
제품B	2020.12.30.	2021.1.20.	2020.6.30.	₩8,000,000

5. 2020.11.1.에 장부가액 ₩25,000,000인 기계장치A를 동종업종 타 회사의 기계장치B(시가 ₩20,000,000)와 교환하였다. 기계장치A의 시가는 불분명하나 교환당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은 ₩23,000,000이다.

6. 제품을 다음과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직수출하기로 하였다. 총공급가액은 $40,000이며, 선적일에 잔금을 수령한다.

일 자	2020.10.10. (계약일)	2020.12.20. (1차 중도금)	2021.2.20. (2차 중도금)	2021.4.20. (선적일)
수령금액	$10,000	$10,000	$10,000	$10,000
기준환율(₩/$)	1,000	1,050	1,100	1,150

7. 제품을 다음과 같이 국내거래처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였다.

매출처	거래금액	제품인도일	내국신용장개설일
(주)A	₩10,000,000	2020.10.1.	2020.6.30.
(주)B	12,000,000	2020.11.1.	2021.1.25.
(주)C	13,000,000	2020.12.1.	2021.1.30.

8.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20,000의 제품을 2020.10.10.에 인도하고 그 대금은 2020.12.10.에 미화($)로 수령하였다.

일 자	2020.10.10.	2020.12.10.
기준환율(₩/$)	1,000	1,100
대고객외국환매입률(₩/$)	990	1,080

9. 2020.11.10.에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품의 원재료(수량 100개, 장부가액 ₩15,000,000, 시가 ₩16,000,000)를 대여하고 2020.12.10.에 동일한 원재료(수량 100개, 시가 ₩17,000,000)를 반환받았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주)세무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0.10.1.~2020.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율 및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0점)

<답안 양식>

<자료 1>의 항목번호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1			
· ·			
9			
합계			

<자료 2> 다음은 과세사업(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과 면세사업(생선판매사업)을 겸영하는 (주)대한(중소기업 아님)의 2020년 과세기간의 자료이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구 분	2020년 제1기	2020년 제2기		
		7.1.~9.30.	10.1.~12.31.	계
생선판매사업	₩125,000,000	₩70,000,000	₩123,750,000	₩193,750,000
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	375,000,000	180,000,000	251,250,000	431,250,000
계	₩500,000,000	₩250,000,000	₩375,000,000	₩625,000,000

2. 2020.12.20.에 생선판매사업과 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A와 부수토지를 ₩253,5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이 금액은 상기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건물A와 부수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단, 건물A는 매입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양도일 현재의 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장부가액	감정가액*1)	기준시가
건물A	₩60,000,000	₩120,000,000	₩80,000,000
토지	40,000,000	40,000,000	40,000,000
계	₩100,000,000	₩160,000,000	₩120,000,000

*1) 2020.6.20.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임

3. 2020.10.11.에 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에 사용하던 건물B(취득가액은 ₩250,000,000이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취득일 2016.8.7.)를 생선판매사업에도 사용하기로 하였다. 겸용사용일 현재 건물B의 감정가액은 ₩200,000,000이다.

4.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구 분	2020.7.1.~2020.9.30.	2020.10.1.~2020.12.31.
생선판매사업	₩3,000,000	₩4,000,000
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	6,000,000	8,000,000*1)
공통매입세액*2)	3,000,000	5,000,000

*1)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1,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 공통매입세액은 생선판매사업, 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5.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생선판매사업과 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에 사용될 생선의 매입과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주)대한은 생선의 매입시기가 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법인이 아니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재고는 없다. 2020년 제2기 예정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기 간	매 입	사 용		기간말일 재고*1)
		생선판매	생선통조림 원료	
7.1.~9.30.	₩109,660,000	₩41,260,000	₩60,900,000	₩7,500,000
10.1.~12.31.	172,900,000	75,000,000	95,400,000	10,000,000

*1)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6. 2019.10.1.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반용 트럭을 ₩60,000,000(부가가치세 ₩6,000,000 별도)에 취득하였다. 2019년 제2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각각 ₩79,200,000과 ₩280,800,000이었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0.10.1.~2020.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답안 양식>

<자료 2>의 항목번호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1			
2			
3			

물음 3) <자료 2>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0.10.1.~2020.12.31.)의 매입세액 공제액과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2점)

<답안 양식>

<자료 2>의 항목번호	매입세액 공제액	매입세액 불공제액
4		

물음 4) <자료 2>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0.10.1.~2020.12.31.)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제시하시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2점)

<답안 양식>

<자료 2>의 항목번호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5	

물음 5) <자료 2>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운반용 트럭과 관련하여 2020년 제2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고,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차감여부를 표시하시오. (2점)

<답안 양식>

<자료 2>의 항목번호	세액	가산 또는 차감 여부
6		

세법학 1부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2010년 5월에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비상장법인이다. A회사의 주주는 거주자 甲, 乙, 丙이다. 甲은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40%, 甲의 배우자인 乙은 20%, 甲의 동생인 丙은 40%를 회사설립 이후 2020년 현재까지 각각 소유하고 있다. 甲과 乙은 丙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대여해준 명의수탁 주주에 불과하다.

A회사는 2015년부터 사업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2016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고, 2018년도에는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19년 11월 30일 A회사의 2016, 2017, 2018 사업연도의 체납액에 대해 甲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물음 1)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과세관청이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甲을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이 적법한지를 설명하시오. (14점)

물음 2) <사례>와 달리 만일 甲과 乙이 A회사의 실질적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면, 과세관청이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乙을 지정하여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범위를 설명하시오. (6점)

【문제 2】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1>
'우주사'라는 상호로 대금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2018년 3월 4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자금주들에게 A상호신용금고(이하 'A금고'라 함)를 소개하여 합계 60억 원의 예금을 A금고에 유치하여 주었다. 甲은 위 기간 동안 A금고로부터 예금유치 관련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함)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때 A금고는 甲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2019년 5월 20일 甲은 이 사건 수수료 1억 원을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7월 11일 甲에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사례 2>
거주자 甲은 거주자 乙과 함께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6월 지분의 1/2인 2억 원을 출자하였다. 甲과 乙은 경매 등을 통한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를 여러 차례 함께 영위하여 왔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하였다.
그런데 甲과 乙은 2017년 4월 30일 공동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때 乙은 甲의 출자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乙 소유의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함)을 2017년 9월까지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甲과 乙 간의 분쟁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과수원을 수용하면서 피공탁자를 乙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2018년 9월 23일 乙이 받은 수용보상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甲이 받은 수용보상금 3억 원에서 출자금 2억 원을 공제한 1억 원을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2020년 7월 30일 甲에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물음 1) <사례 1>에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사례 2>에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설명하시오. (15점)

【문제 3】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1>
외국에 설립된 A단체(이하 'A'라 함)는 재무자문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도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사례 2>
과세관청은 내국법인B(이하 'B'라 함)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경비의 계상 내용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계결정하고자 한다. (단, B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이 아님)

물음 1) <사례 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같은 법은 A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이를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5점)

물음 2) <사례 1>에서 과세관청은 A가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과세소득을 산출하고자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하고, 고정된 장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하시오. (5점)

물음 3) <사례 1>에서 A는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법인세 등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본사가 있는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한다. 해당 송금액에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5점)

물음 4) <사례 2>에서 과세관청이 B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에 근거하지 않고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시오. (3점)

물음 5) <사례 2>에서 B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할 수 없을 경우 사업수입금액을 확정하는 방법과 해당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12점)

【문제 4】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甲은 내국법인A(이하 'A'라 함)의 지배주주이다. 그런데 甲의 특수관계인인 乙은 A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과세관청은 乙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한 사실에 기초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하고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사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丙은 내국법인B(이하 'B'라 함)의 지배주주이다. 한편, 丙과 그의 특수관계인인 丁은 내국법인C(이하 'C'라 함)의 지배주주이다. B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자동차 운송사업 업무를 C에게 임대하였다. 과세관청은 위 사업기회 제공 사실에 기초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하고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단,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그 밖의 법인은 아님)

물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개념 및 구별 실익을 설명하시오. (6점)

물음 2) <사례 1>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과 시가 판정기준 및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7점)

물음 3) <사례 2>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과 정산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및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7점)

세법학 2부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사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甲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6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매수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A은행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았다.

(2) 甲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30일 수탁자인 B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B신탁회사'라 함)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A은행으로, 수익권증서 금액을 58억 원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부동산이 환가되는 경우 A은행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잔액은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B신탁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년 7월 1일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이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러나 甲이 위 대출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A은행의 요청에 따른 B신탁회사의 공개매각 절차에 따라 2019년 2월 23일 乙이 45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위탁자인 甲이 乙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보아 2020년 1월 16일 甲에게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물음 1) 과세관청이 甲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하여 신탁과세 이론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사안을 달리하여 甲이 채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관리 및 처분위탁만을 목적으로 B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수익을 甲에게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신탁계약에 따라 B신탁회사가 2019년 2월 23일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문제 2】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A사는 2020년 1월부터 고급가방(특정물품 운반·보관용 아님)을 직접 생산하되 일부 부족한 수량은 B사에게 생산을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다. B사가 A사에게 공급하는 가액은 개당 500만 원이고 A사의 판매가격은 직접 생산분과 위탁 생산분 모두 1,200만 원이다. 위 각 가액에는 포장비용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포장은 개봉 이후 재활용할 수 없다. 가방표면에는 보석이 장식되어 있고 제조원가 중 보석의 구성비율은 30%이며 나머지는 모두 가방제조원가에 해당한다. B사는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미납세반출승인신청도 하지 않았다.

(2) 한편, A사는 직접 생산한 고급가방 10개를 국외 전시회에 출품하였다가 전시회 종료 후 제조장에 환입하였다. 출품 시에는 관련 승인을 받았으나, 환입 시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3) 이후 2020년 10월 5일 A사는 합의 하에 B사로부터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제조업의 영업을 포괄승계받았는바, 당시 제조장에는 고급가방 50개가 반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였다.

물음 1) 지문(1)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지문(2)와 관련하여 A사가 직접 생산한 고급가방을 국외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및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물음 3) 지문(3)과 관련하여 반출되지 않고 B사의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고급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문제 3】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甲은 A건설회사로부터 부산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16년 11월경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A건설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甲이 A건설회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다.

> 제2조 [잔금 납부시 분양대금의 10% 2년간 납부 유예]
> (1) 매수인이 입주시 납부하여야 할 잔금 중 분양대금의 10%를 입주지정만료일로부터 2년간 납부 유예한다. 다만, 납부 유예한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 제3조 [분양가격 미만으로 시세 하락시 원금 보장제 적용]
> (1) A건설회사는 입주지정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기준시점)에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액이 아파트의 분양가격 대비 하락시 분양가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잔금 납부 유예분을 처리하기로 약정한다.
> ① 분양가격 대비 해당 시세가액이 10% 이상 하락시 → 잔금 납부 유예분 지급면제
> ② 분양가격 대비 해당 시세가액이 분양가 미만~10% 미만 하락시 → 잔금 납부 유예분 중 시세 하락분(분양가격-시세가액) 지급면제

(3)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입주지정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 시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시세가액이 분양가격보다 10% 이상 하락된 것으로 평가되어 2018년 9월 4일 甲에게 유예된 잔금지급채무가 면제되었다.

(4) 그 후 甲이 지급면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9년 7월경에 하였으나 乙구청장은 2019년 8월 7일 이를 거부하였다.

물음 1) 「지방세법」상 甲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지방세기본법」상 甲에게 유예된 잔금지급채무의 면제 사실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4】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사례>

(1) 甲은 A시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서 B공업사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12월 24일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2013년 3월 7일 주식회사C를 설립하였다.

(2) 甲은 2013년 1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규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였다.

(3) 甲은 2013년 1월 3일 현물출자로 인수할 주식회사C의 주식 20만주 가운데 19만 8천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함)를 처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수증자들과 체결하고, 2013년 4월 30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주식회사C는 설립등기 전인 2012년 12월 29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수증자들이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내역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다.

(5) 乙세무서장은 2017년 3월 8일 甲에게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억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물음 1) 지문(2)에서 甲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과세특례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조세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되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하 '사후관리규정'이라 함)이 신설되었고, 동 법률 부칙 제11조는 이 조항을 201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관리규정의 의의 및 적용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 사례에서 乙세무서장의 甲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